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BF 인증운영기관 지정 근거 마련 및 운영체계 정비〉
■ 남인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4153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 은 호

목 차

I . 개요	1
--------------	---

II . 검토의견	2
-----------------	---

I. 개요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남인순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11. 12.

(3) 회 부 일 : 2025. 11. 1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인증운영기관의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규정하고 있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과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규정하고 있는 「발명진흥법」에서는 인증제도 운영을 위하여 인증운영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타 인증운영기관 제도와 유사하게 제도를 개선하여 보건복지부장관등이 인증운영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인증운영기관의 업무에 인증의 사후관리 및 유효기간 연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10 등).

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등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BF 인증’¹⁾이라 함)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운영기관을 지정하도록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10 등).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이 조,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9까지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① ----- ----- ----제10조의10까지에서----- ----- ----- ----- ----- ----- -----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의10(인증운영기관의 설치) ① 국가는 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인증운영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의10(인증운영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 중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춘 인증기관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운영

1) Barrier Free 인증

1. ~ 4. (생략)

<신설>

<신설>

5. (생략)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인증운영기관의 설치·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신설>

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제10조의3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6. 제10조의5에 따른 인증의 사후관리

7. (현행 제5호와 같음)

<삭제>

③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인증운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운영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0조의7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이 취소된 경우

④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인증운영기관이 제10조의7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업무가 정지되는 경우 그 정지기간만큼 인증운영기관의 업무를 정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u><신 설></u>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운영기관의 설치·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제3항에 따라 인증운영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 -지정 절차, 그 밖에 인증운영기관 운영에----- -----.
--	--

2. 검토의견

□ BF 인증은 건축물, 공원,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및 지역 등에 대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접근·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이 설치되었으며, 이후에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임(참고자료 1: BF 인증 개요).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이라 함) 제10조의2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이라 함) 제17조의2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공동부령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서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공동 소관으로, 관련 업무는 두 부처가 2년마다 순차적으로 업무를 맡아 수행하며 2025년 4월부터 2027년 3월까지 총괄 소관 부처는 보건복지부임.

< BF 인증 제도 근거 법률 및 소관 부처 >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근거 법률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이 조,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9까지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주는 보건복지부장관등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주는 인증 신청 전에 대상시설의 설계도서 등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이하 “의무인증시설”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제2항 후단에 따른 예비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을 받은 의무인증시설의 시설주는 제10조의3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아야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신축·증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교통약자법」 제17조의2(교통수단 등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설치·관리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시설 설치·관리자는 인증 신청 전에 대상시설의 설치계획 또는 설계도서 등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하는 대상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제3항 후단에 따른 예비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u>설</u>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u>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u>」에 따른 공공기관 외의 자가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④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증 기준·절차,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절차, 인증기관 지정 기준·절차, 그 밖에 인증 제도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규정에 따른 인증 및 제5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보건복지부장관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신청과 인증 기준 및 절차, 제5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그 밖에 인증제도의 실시에는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제6항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주관 인증시설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 건축물, 공원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및 지역

□ 현재,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4항2)에 따라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총 11개 기관이 BF 인증기관으로서 인증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인증운영기관은 한국장애인개발원임.

- 인증운영기관은 현행법 제10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규칙3)에 따

-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④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10(인증운영기관의 설치) ① 국가는 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인증운영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인증기관 관리·지원
 2. 인증 관련 연구·개발 및 기술 보급
 3. 인증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4. 인증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5. 그 밖에 인증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인증운영기관의 설치·운영 등) ①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10제1항제5호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인증에 관한 홍보 및 상담
 2. 인증에 관한 통계 작성·관리 지원

라 인증기관 관리·지원, 인증 관련 연구·개발 및 기술 보급, 인증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인증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인증에 관한 홍보 및 상담, 인증에 관한 통계 작성·관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함.

-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인증운영기관으로서의 업무를 2025년 1월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 인증 업무는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함.

< BF 인증기관 현황 >

명칭	인증범위	인증기관 유효기간
한국장애인개발원 (인증운영기관)	일반인증기관 (건축물, 공원, 여객시설, 교통수단, 도로, 지역)	'25. 09. 28.~ '28. 09. 27.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문인증기관 (건축물)	'25. 09. 28.~ '28. 09. 27.
한국생산성본부 인증원	전문인증기관 (건축물)	'25. 09. 28.~ '28. 09. 27.
(사)한국녹색기후기술원	일반인증기관 (건축물, 공원, 여객시설, 교통수단, 도로, 지역)	'25. 09. 28.~ '28. 09. 27.
한국농어촌공사	전문인증기관 (건축물)	'25. 09. 28.~ '28. 09. 27.
(주)크레비즈 인증원	전문인증기관 (건축물, 공원)	'25. 09. 28.~ '28. 09. 27.
한국부동산원	전문인증기관 (건축물, 공원)	'23. 03. 28.~ '26. 03. 27.
(사)한국환경 건축연구원	전문인증기관 (건축물, 공원, 여객시설)	'23. 03. 28.~ '26. 03. 27.
(사)한국교육녹색 환경연구원	전문인증기관 (건축물, 공원)	'23. 03. 28.~ '26. 03. 27.
(사)건축성능원	전문인증기관 (건축물)	'25. 01. 01.~ '27. 12. 31.
(사)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	전문인증기관 (건축물)	'25. 01. 01.~ '27. 12. 31.

자료: 한국장애인개발원

3. 그 밖에 인증 활성화를 위해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개정안은 BF 인증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등이 인증기관 중에서 인증운영기관을 지정하여야 함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인증기관 관리·지원, 기술개발, 정보체계 구축뿐 아니라,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및 사후관리까지 인증운영기관이 일관된 체계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인증운영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정된 인증운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 따라 인증기관이 인증운영기관의 역할까지 동시에 수행하게 된다면, 인증의 심사·판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제도 운영 전반을 관리·감독까지 하게 되는 구조가 되므로, 이해충돌 및 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음.

- 예를 들어,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지원, 인증 관련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등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인증 여부까지 결정한다면, 관련 업무의 객관성이 담보되기 어려울 수 있음.

따라서, 인증운영기관을 인증기관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개정안 제10조의10제1항)이 적절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유사한 제도인 녹색건축 인증과 지식재산 경영인증은 각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⁴⁾와 「발명진흥법」 제24조의 2⁵⁾에서 인증운영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녹색건축의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녹색건축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지정되어 인증 운영기관으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인증업무는 수행하지 않음(참고자료 2: 녹색건축 인증 및 지식재산 경영인증 관련 현황).

□ 한편, 개정안 부칙 제2조는 개정 후, 새롭게 인증운영기관이 지정되더라도, 기존 인증운영기관의 법적 지위가 단절되지 않도록,

“이 법 시행 당시 인증운영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제10조의10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운영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에서는 인증운영기관을 ‘위탁’할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경과조치는 ‘이 법 시행 당시 인증운영기관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가. 보건복지부

□ 인증운영기관의 운영 방식을 지정으로 하고, 인증운영기관의 업무에 사후관리를 추가하여 개별 인증을 관리하는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함.

5)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에 있어서 전략적인 경영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⑦ 인증의 절차·비용, 인증기준, 인증마크, 인증업무 운영기관 지정, 인증의 유효기간,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만, 인증운영기관이 인증기관을 관리·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점을 고려하면, 인증운영기관의 자격을 인증기관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낮으며, 인증기관이 아닌 기관이 인증운영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함.

문 의 처
02)6788-5502

〈참고자료 1: BF 인증 개요〉

■ 인증 내용

· BF 인증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이 개별시설물 및 지역을 접근 및 이용, 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 및 설계, 시공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 관계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제17조의2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 인증 대상

- 개별시설: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 지역: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군·구 및 「교통약자법」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

*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3항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며, 법 제10조2제3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시설

■ 인증 신청자

- 개별시설: 개별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시공자(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의 시공자로서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인증신청에 동의하는 경우)
-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통약자법」 제15조의2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역의 개발사업 시행자

■ 인증 종류 및 신청시기

- 예비인증: 개별시설 또는 지역의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본인증 신청 전
- 본인증: 개별시설의 공사를 완료한 후 또는 운행 허가를 받은 이후

■ 인증유효기간

- 예비인증: 본인증 전까지 효력을 유지하나, 지역 및 개별시설이 완료·허가된 후 1년 이내 본인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효력 상실
- 본인증: 10년

자료: 보건복지부

〈참고자료 2: 녹색건축 인증 및 지식재산 경영인증 관련 현황〉

- 녹색건축 인증의 인증운영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인증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인증기관의 심사 결과 검토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함.
- 지식재산 경영인증의 인증운영기관(한국발명진흥회)은 지식재산처장의 인증 심사 업무를 지원함.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운영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영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증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인증기관의 심사 결과 검토에 관한 업무
3. 인증제도의 홍보, 교육, 컨설팅, 조사·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업무
4. 인증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
5. 심사전문인력의 교육,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
6. 인증 관련 통계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업무
7.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8(인증업무 운영기관 지정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4조의2제7항에 따라 인증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비영리기관을 인증업무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 분야에 전문성이 있을 것
2. 인증업무를 담당할 전담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3. 인증심사에 투입되는 인력을 위한 교육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 ② 인증업무 운영기관은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지식재산처장의 인증 심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 녹색건축 인증 인증기관(총 8개 기관): (사)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사)한국그린빌딩협회, 크레비즈인증원, (사)한국부동산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국토안전관리원,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지식재산 경영인증 인증기관: 지식재산처